

의안번호	제443호
의결 연월일	2009년 12월 일 (제285회)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09년 11월 24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3
----------	-----

제출연월일 : 2009년 11월 24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준용
- 시공 중인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 근거를 명시하고,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을 일부 조정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공 중인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 근거 명시(안 제5조제2항 신설)
-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 일부 조정(안 제6조제2호, 제4호)
- 변속차로 등의 공동사용 허가 등(안 제13조 신설)
- 원상복구 및 허가 취소 조문 추가(안 제15조, 제16조 신설)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4조에 따라”로, “규정함을”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6.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7. “교차로 영향권”이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8.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방도(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지방도를 제외한다)에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등을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제4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연결허가 신청 이전에 연결을 하고자 하는 지방도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도지사에게 확인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 중 제1단계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공 중인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연결 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중 각 호외의 본문과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도의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조에 해당하는 지방도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종단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지방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 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 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로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제5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도에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가. 「도로법」 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도로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

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제7조의 제목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연결로”를 각각 “변속차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를 “지방도”로 하며, 제2항 중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를 “지방도와 같거나”로 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지방도와 같거나 완만하게 설치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인접한 두 개 이상의 사업부지를 진·출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변속차로가 서로 겹치거나 근접되어 본선 도로의 엇갈림 현상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된 사업부지 사이를 부가차로로 연결하고 단일 진·출입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한다.

3. 접속되는 지방도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콘크리트 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제10조 각 호외의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가구 이하 주택 등의 진입로로서 가각(街角)정리만을 하는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제4호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지방도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7.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1조의 제목과 같은 조 제2호 중 “연결로”를 각각 “변속차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로”를 “지방도”로 한다.

제12조 각 호외의 본문과 같은 조 제2호 중 “연결로”를 각각 “변속차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로”를 “지방도”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공동사용) ① 도지사는 인접된 시설의 진·출입에 필요한 변속차로 등을 공동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을 공동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 등의 공동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시설비의 부담은 허가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진·출입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시행) 당해 변속차로등 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변속차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제17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15조와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원상복구)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취소가 된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할 경우 도로의 기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허가 취소)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결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예정일보다 1년 이상 준공이 지체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연결 재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허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결허가금지구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허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별표 1 도로과 소관 제 5호란 중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도로과	5	자.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허가	도로법 제64조제2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

[별표 1]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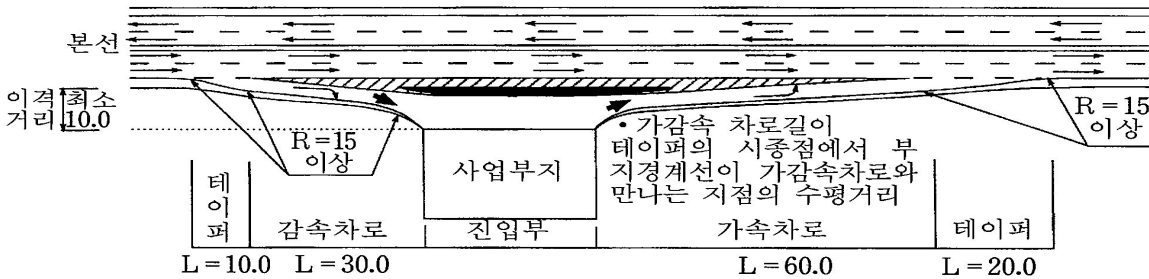
도면명	작성요령
위치명	1/50,000(또는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시설물의 위치표시
평면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기타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중단면도	종방향 1/1,200 이상, 횡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단면도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폭 양쪽으로 연결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조물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대공사도	변속차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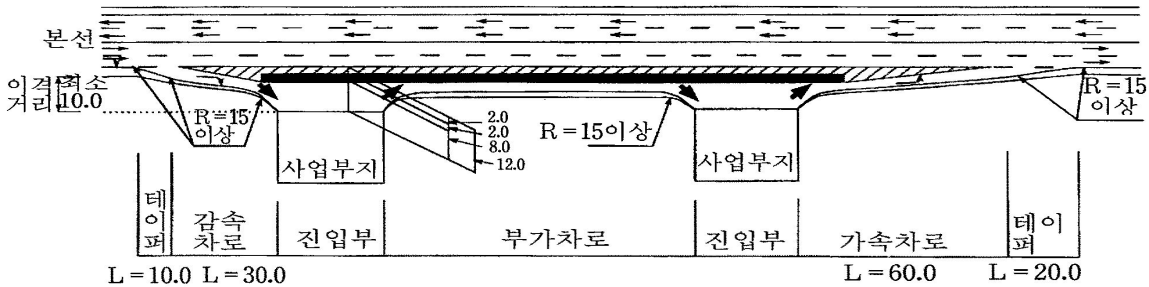
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관련)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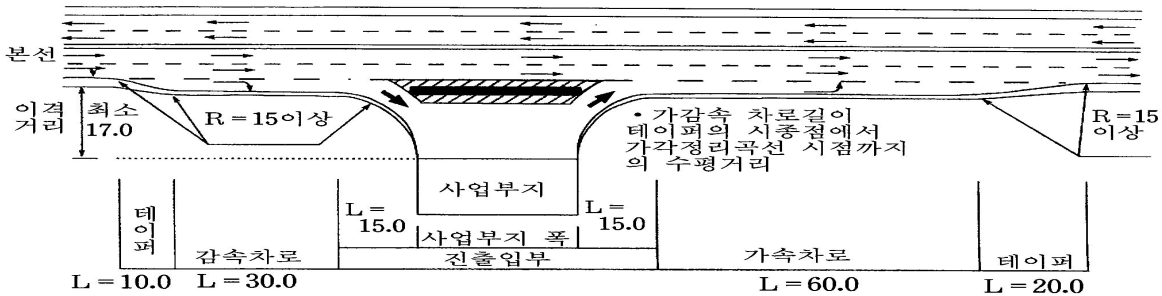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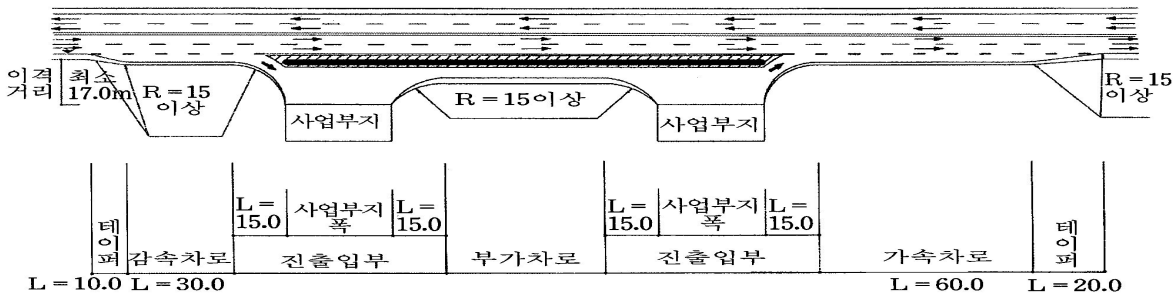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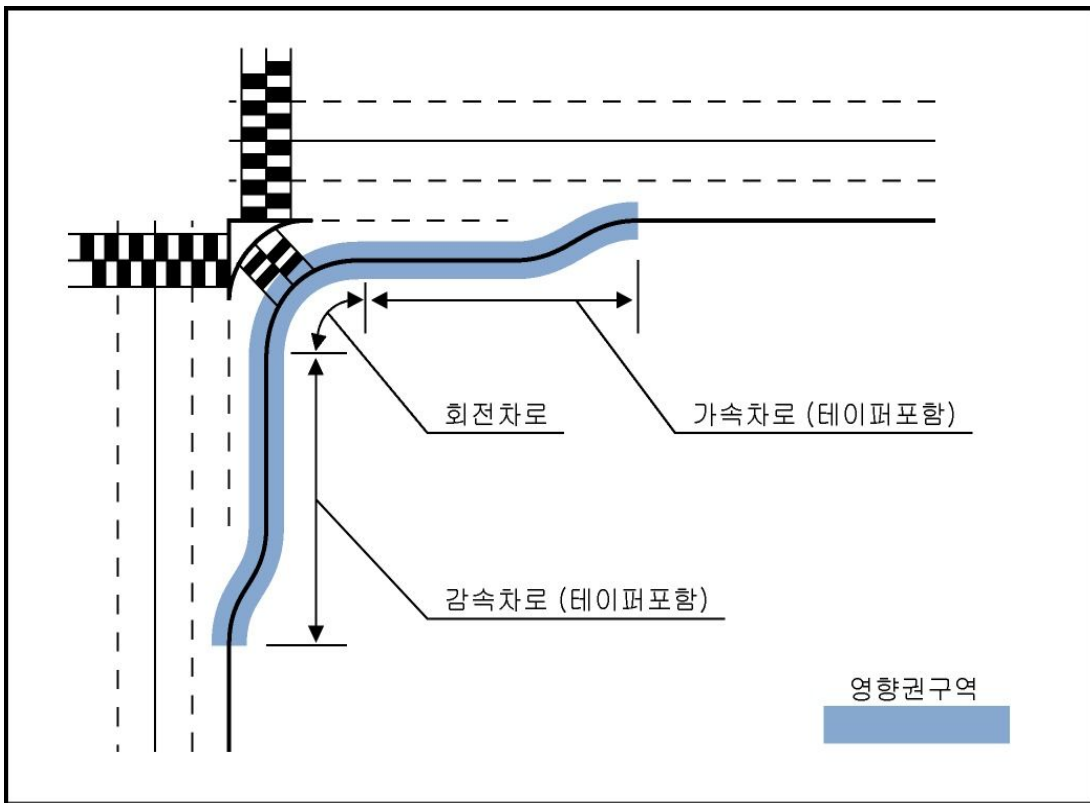
1. 위 표 중 R은 곡선반경,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로 한다.
2. 사업부지와 변속차로등의 연결지점은 부지경계선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별표 4]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제6조제3호관련)

- 1.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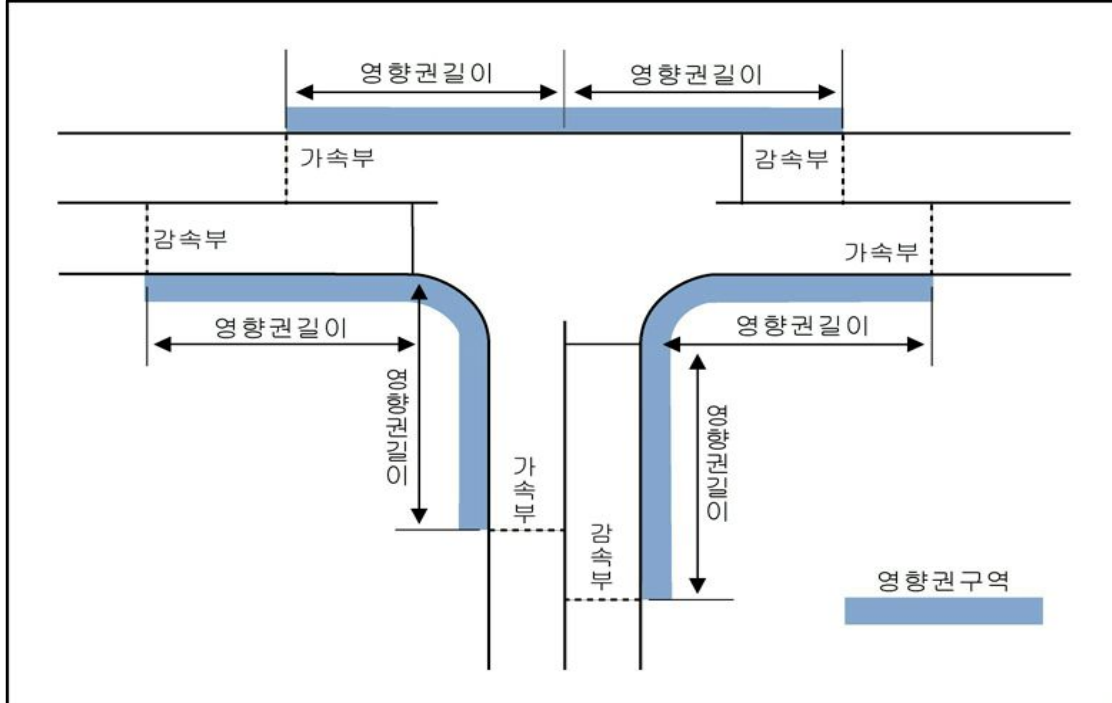
- 2.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교차로 영향권의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km/h)	교차로 영향권 길이(m)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50	50	30
60	70	40
70	90	60
80	120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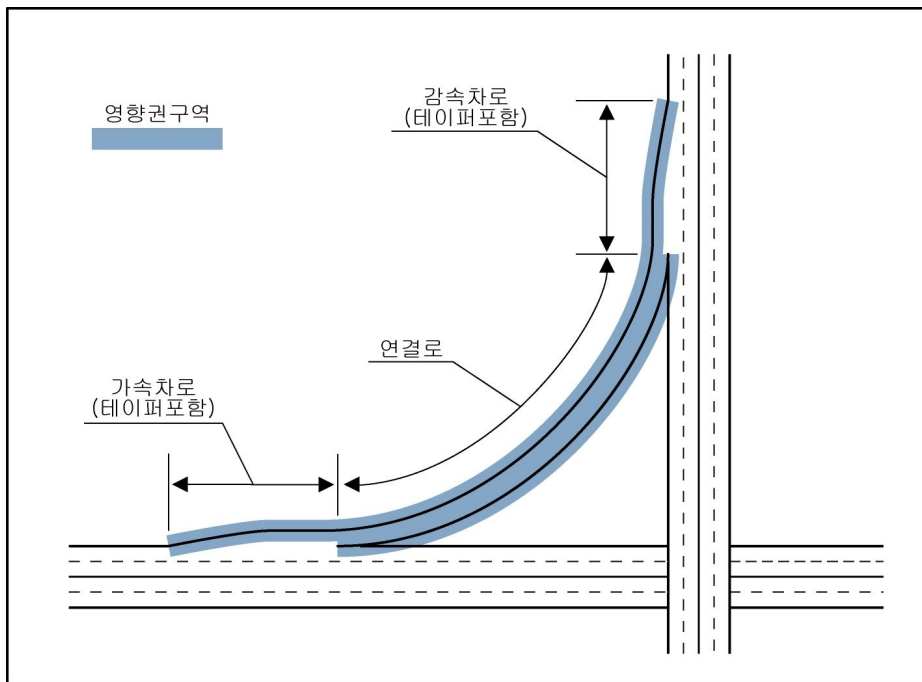
나. 교차로 영향권의 길이 측정 기준은 아래 예시도와 같이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적용하며, 세갈래교차로의 직진 차로부에는 교차로 중심에서부터 적용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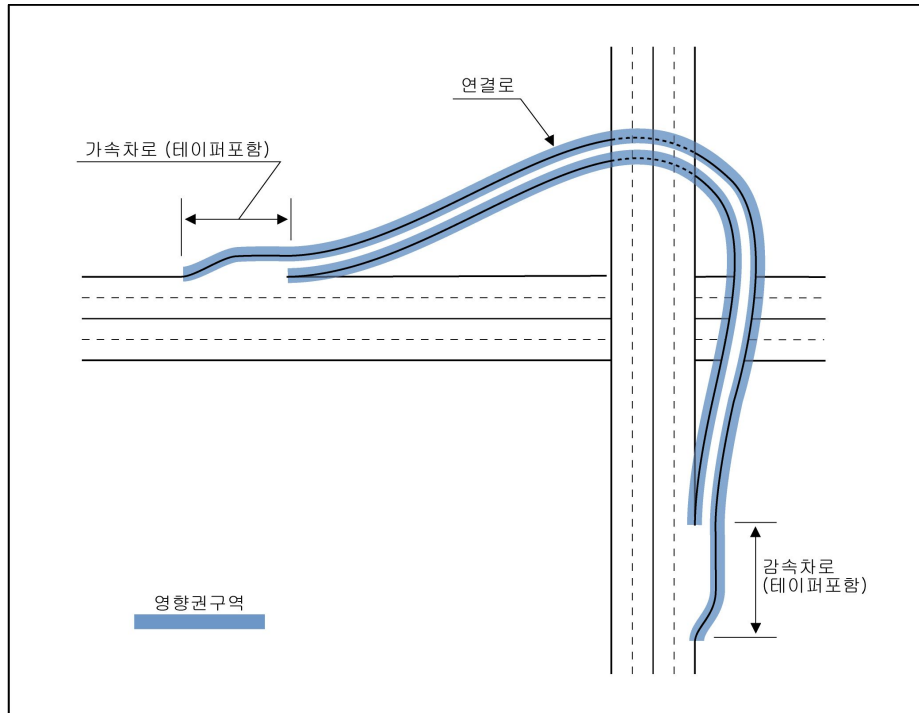


3.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점에서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1>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



<예시도 2>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



[별표 4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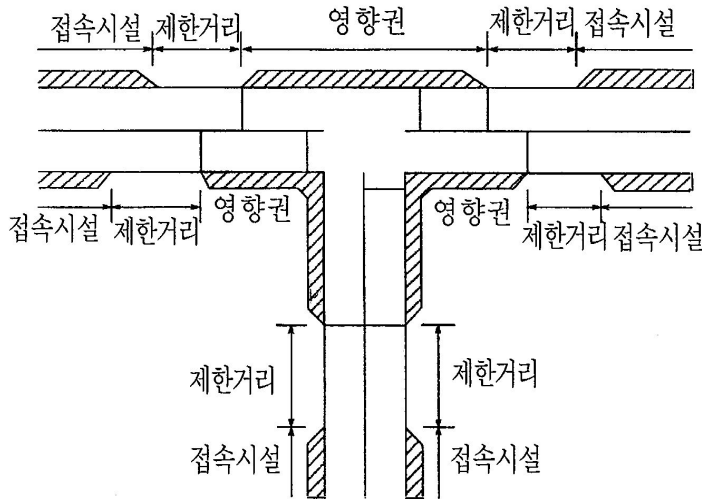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제6조제3호관련)

(단위 : 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교차로 영향권으로부터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60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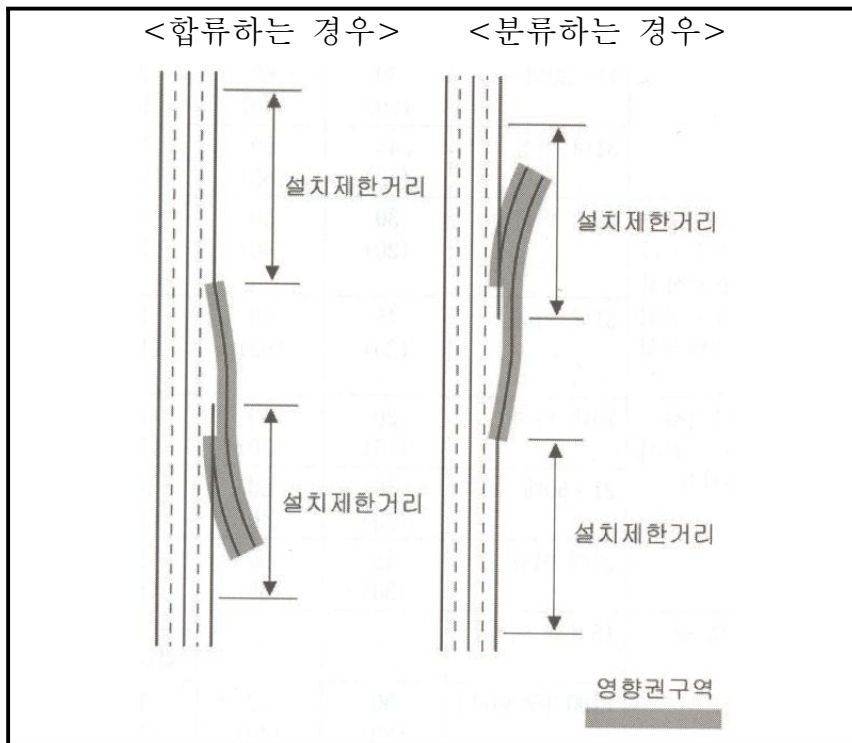
비 고

1. 평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2. 입체교차로의 경우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후방으로 설치제한거리를 적용한다.

<예시도> 입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관련)

(단위 : 미터)

시 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진입로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2. 휴게소·주유소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60 (40)	10 (10)	20 (20)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40 (30)	10 (1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11~30대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6. 주차장·건설기계주기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21~50대	30 (20)	60 (40)	10 (10)	20 (20)
	5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8. 주택 집입로 등	(5가구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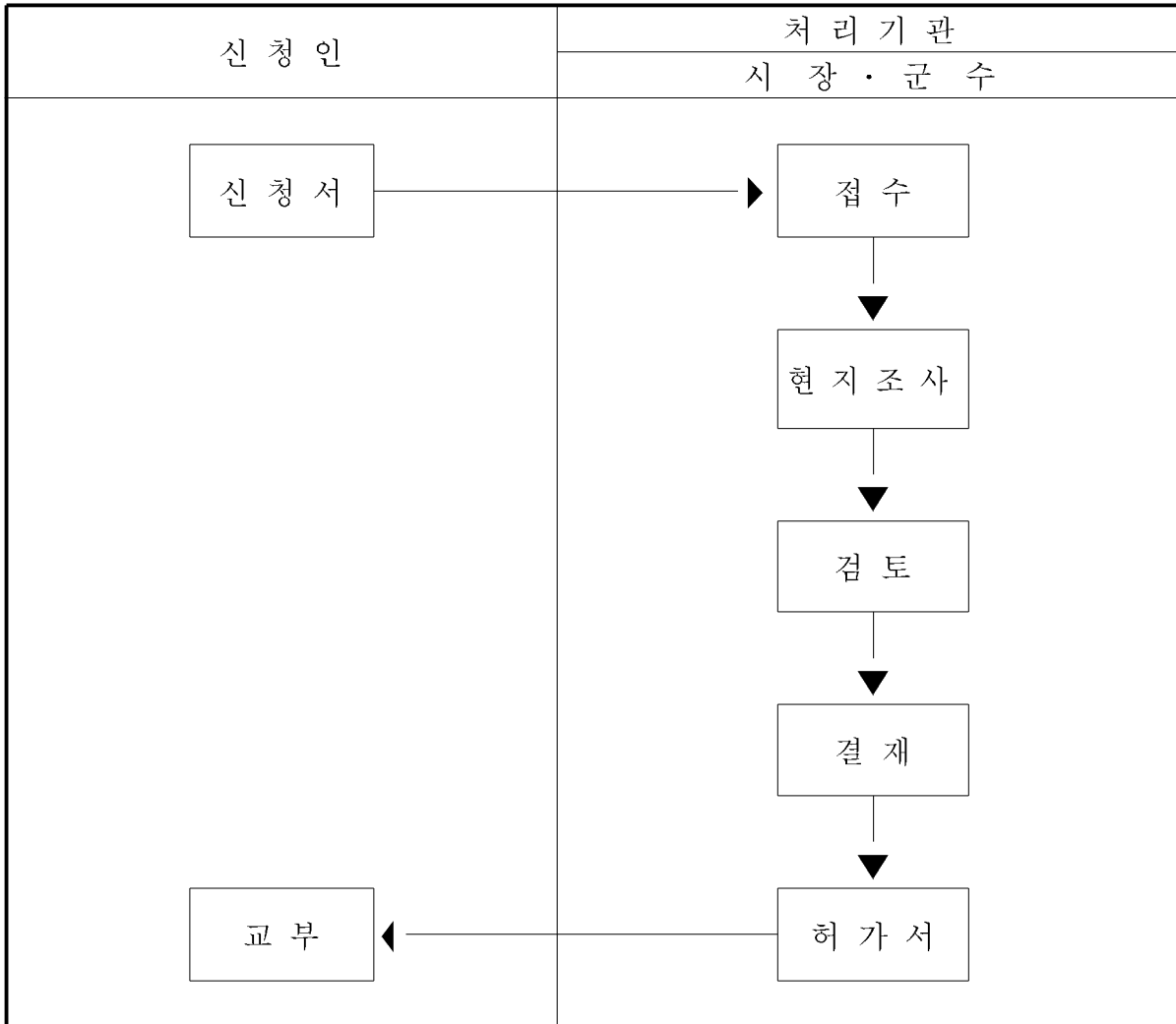
	(100가구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9.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3m)	

주

- 1) 본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임. 다만,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임.
-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함
- 3) 위 표 시설란의 제5호 내지 제7호의 주차대수 산정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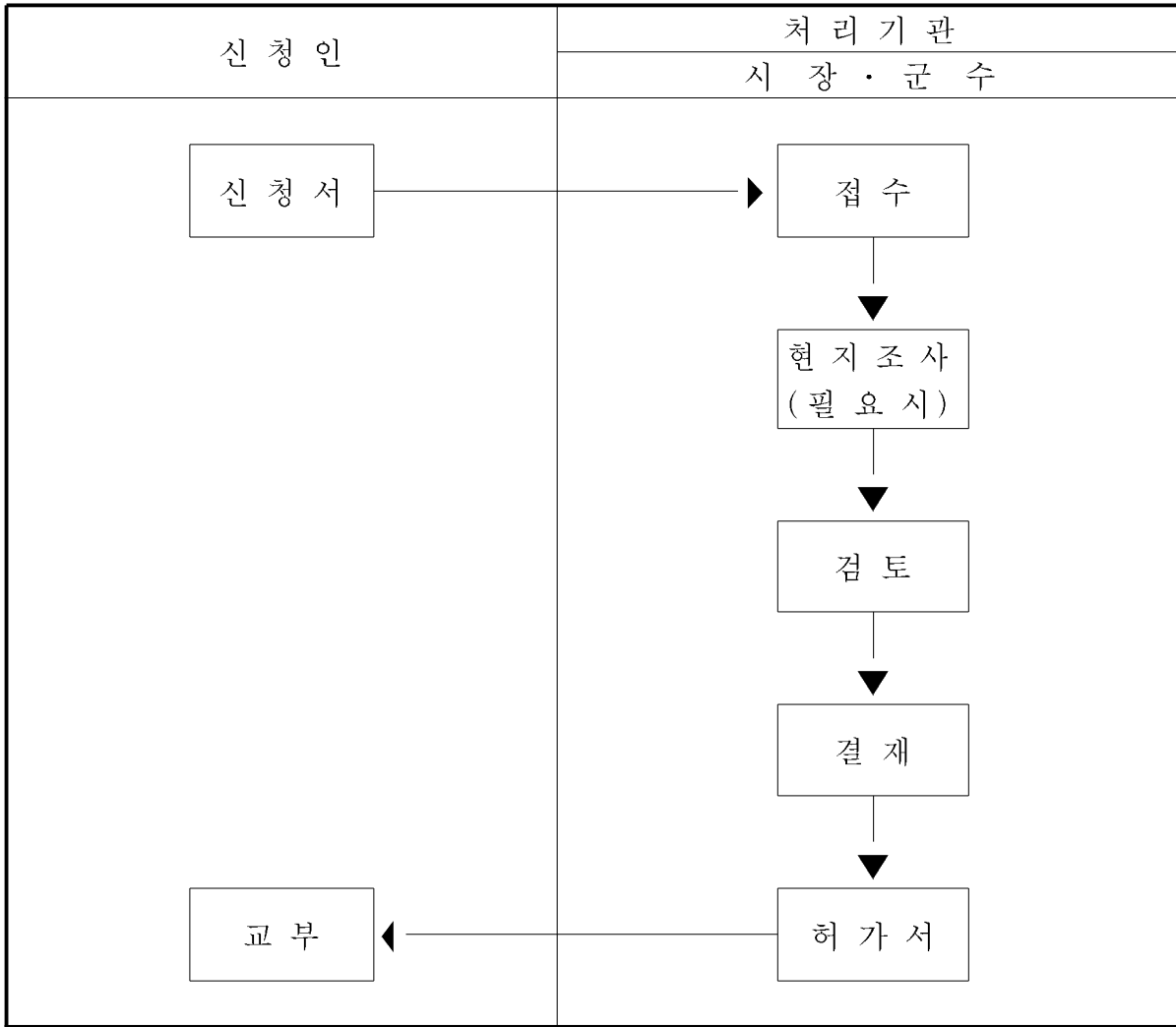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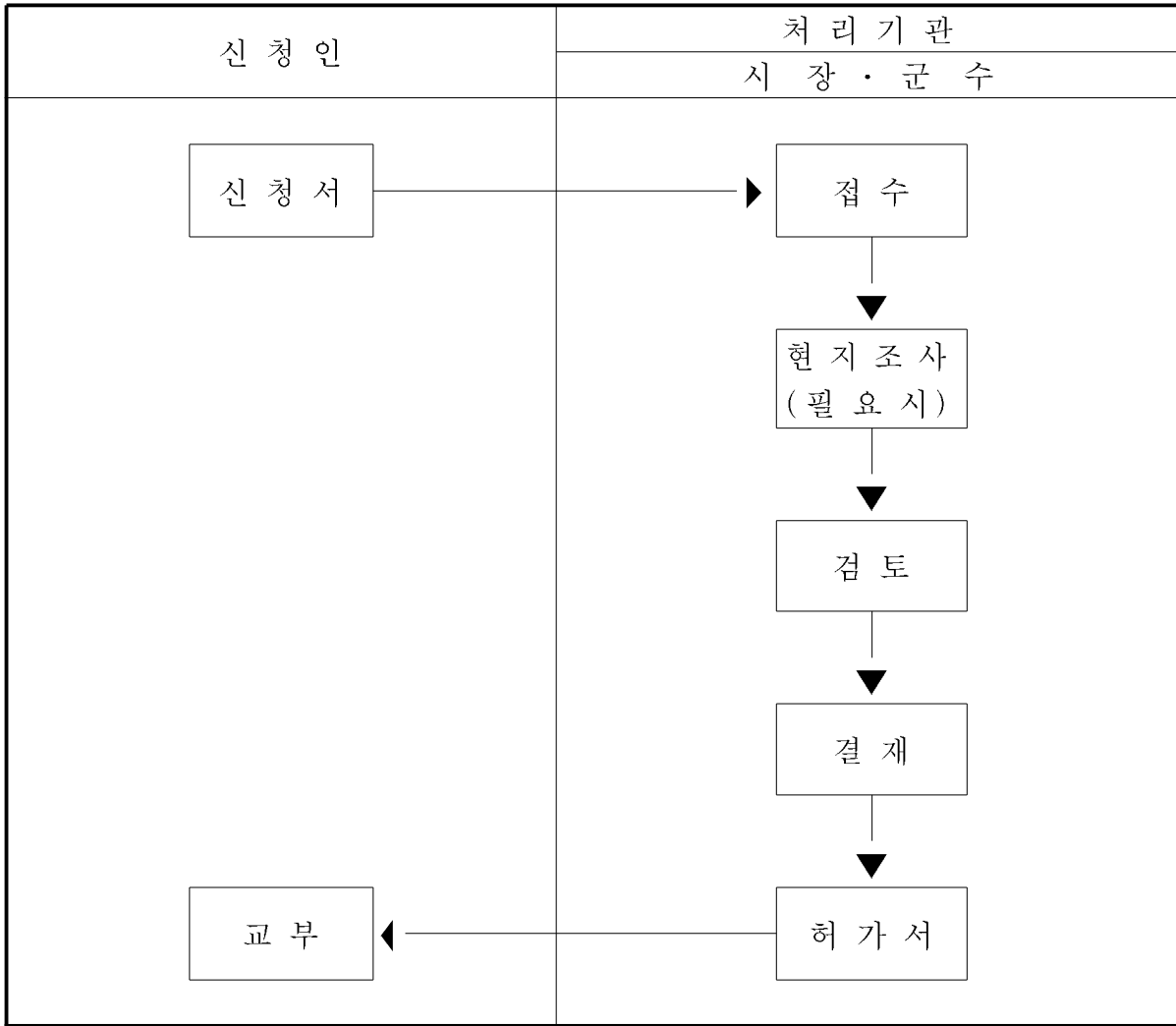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	"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도류화시설"이라 함은 차량	4.	<삭제>	

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섬, 변속차로, 노면표시 등의 시설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규정에 의한 지방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방도를 제외한다. 이하 “도로”라 한다)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5.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6.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7. “교차로 영향권”이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8.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방도(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지방도를 제외한다.)에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다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 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외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생략)

2.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이하 “연결로등”이라 한다)의 설계도면

3.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연결로등의 설치계획

른 도로 등을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외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3. ~ 5. (생략)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5조(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도지사는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2. 변속차로등의 설치계획

3. ~ 5.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연결허가 신청 이전에 연결을 하고자 하는 지방도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도지사에게 확인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지방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 중 제1단계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공 중인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도의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조에 해당하는 지방도에는 제1호·제2호

1. (생략)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별표 4의 교차로 주변(지방도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차로 주변을 포함한다)의 연결로등의 설치제한 거리 이내의 구간

·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2. 종단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지방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 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로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제5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도에는 별표 4의 교차로 영

4.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240미터 이내의 구간

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가. 「도로법」 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도로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5. ~ 6. (생략)

제7조(연결로등의 포장 등) ①연결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연결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생략)

1. ~ 4. (생략)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신설>

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 ~ 6. (현행과 같음)

제7조(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①변속차로등은 접속되는 지방도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변속차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지방도와 같거나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지방도와 같거나 완만하게 설치

제8조의2 (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인접한 두 개 이상의 사업부지를 진·출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변속차로가 서로 겹치거나 근접되어 본선 도로의 엇갈림 현상으로 교통소통에

제9조(배수시설) (생략)

- 1. ~ 2. (생략)
-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고,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된 사업부지 사이를 부가차로로 연결하고 단일 진·출입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제9조(배수시설) (현행과 같음)

- 1. ~ 2. (현행과 같음)
- 3. 접속되는 지방도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콘크리트 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
제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
미터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콘크리트측구로 할
것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 3. (생략)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
5. (생략)
6. 연결로등을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
제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
미터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콘크리트측구로 할
것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5가구 이하 주택 등의 진입로로서 가각(街角)정리만을 하는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지방도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 3. (현행과 같음)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
5. (현행과 같음)
6. <삭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와 분리대 사이에 별도의 차로와 측대를 보호하여 가속 및 감속차로와 연결할 것

7.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다만, 통합되는 연결로 등이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할 것

제11조(연결로등의 길어깨) (생략)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로등의 노면이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등을 설치할 것
3. ~ 4. (생략)

7.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1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현행과 같음)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지방도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등의 노면이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등을 설치할 것
3. ~ 4. (현행과 같음)

제12조(부대시설) 연결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연결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신 설>

제13조(공사시행) 당해 연결로등

제12조(부대시설) 변속차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변속차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지방도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3조(공동사용) ① 도지사는

인접된 시설의 진·출입에 필요한 변속차로 등을 공동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을 공동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 등의 공동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시설비의 부담은 허가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진·출입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조정할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시행) 당해 변속차로

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연결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4조(시행세척) 연결공사의 세부설계기준 기타 연결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등 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변속차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원상복구)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취소가 된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할 경우 도로의 기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허가 취소)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결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예정일보다 1년 이상 준공이 지체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발취

□ 도로법

제12조 (지방도)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3.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역 또는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항만·역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4.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 또는 역에서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20조 (도로 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도: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①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제공하는 통로,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전용도로나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함에 따라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에게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제85조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 "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등을 말한다.
4. 삭제
5. "부가차로"라 함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6. "교차로"라 함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7. "교차로 영향권"이라 함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8. "연결로"라 함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이하 "도로"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 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연결허가의 신청등) ①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등"이라 한다) 및 부대 시설 등의 설계도면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변속차로등의 설치계획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청에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관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 중 제1단계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

시설물 현황조서를 작성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종단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 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 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가. 「도로법」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제7조 (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①변속차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변속차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성토부 또는 절토부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8조의2 (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제9조 (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측구 등 배

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이상의 U형콘크리트측구로 할 것

제10조 (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
6. 삭제
7.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1조 (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등의 노면이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

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등을 설치할 것

제12조 (부대시설) 변속차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3조 (공사시행) 당해변속차로등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변속차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